

수원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4가단5137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남지혜

피 고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특별대리인 사내이사 B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4. 7. 26.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454,621,208원 및 그 중 453,077,256원에 대하여 2023. 12. 20.부터 2024. 6. 18.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3. 7.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3. 7. 25. 접수 제18910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원고기금이 2018. 3. 21.과 2021. 3. 4. 총 3회에 걸쳐 피고 A과 사이에 은행(중소기업은행) 대출과 관련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2023. 8. 23. 당좌수표의 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킨 사실, 원고기금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3. 12. 20.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460,351,846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이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의 일부가 변제되긴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액이 미변제 상태로 남아 있는 사실, 한편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얼마 전인

2023. 7. 24. 피고 C와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각 건물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 C에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이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사실,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의 발생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에 관하여 원고기금과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 C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원고기금의 대위변제일인 2023. 12. 20.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3. 7. 24. 이후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 2023. 7. 24. 당시에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발생근거가 된 원고기금과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위 2023. 7. 24.로부터 불과 한 달 후인 2023. 8. 2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원고기금은 2023. 12. 20. 대위변제를 통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 또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던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될 개연성이 컸던 피고 A이 피고 C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원고기금을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보아야 하고, 피고 A이 위와 같은 자산상태를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 C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A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기금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별지